



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 12 호 |
| 의 결 연 월 일 | 2012. 11. 2.(금) (제 6 회) |

의
결
사
항

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
연장 운영계획(안)

국가지식재산위원회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제출자 | 국무총리실장 임종룡 |
| 제출 연 월 일 | 2012. 10. 29.(월) |

1. 의결주문

- 「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연장 운영계획(안)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

2. 제안이유

- 국내 지재권 소송체계를 재검토하고 소송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8개월을 기한으로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왔는바,
- 그간의 논의내용을 집대성하고 향후 특별전문위원회 도출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특별전문위원회의 4개월 연장 운영을 제안

3. 주요내용

- (운영경과)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출범(12.3.7) 이후 ‘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방안’ 및 ‘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’을 “분리”하여 대안별 비교 검토 등 집중 논의
※ ‘12.4~10월, 총 7회에 걸쳐 특별전문위원회 개최
- (연장안) 추가 논의를 위해 특위 운영 4개월 연장(‘12.11. → ’13.2.)

4. 향후계획

- 특별전문위원회 회의 개최(‘12.11월~’13.2월)
 -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필요시 수시 개최
- 특별전문위원회 2012년 운영결과 본위원회 보고(‘12.12월 초)
- 특별전문위원회 최종 운영결과 본위원회 보고(‘13.3월)

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연장 운영계획(안)

2012. 10. 29.



국가지식재산위원회

1.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위원회 구성 배경

-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 간 지식 재산을 둘러싼 국내외 분쟁이 급격히 확산
 - 그러나, 우리 기업(특히 중소기업)은 특허분쟁 해결제도의 비효율성, 특허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효과적 분쟁 대응에 취약
- 국내 지식재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창작·발명 의욕 고취를 위해, 지재권 보호의 궁극적 보루인 특허소송의 선진화가 시급한 시점

▶▶▶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것을 의결 ('12.131,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3차 회의)

2. 특별위원회 운영 주요경과

-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출범('12.3.7)
 - 유관기관*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10인의 위원 선정

* 법무부, 특허청, 상공회의소, 지식재산학회, 발명가협회, 변호사협회, 변리사회 등

| 구분 | 성명 | 현 직위 | 비고 |
|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위원장 (과기계) | 이광형 | ◦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및뇌공학과 석좌교수 | ◦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지식전문위원 |
| 민간 (6인) | 학계 | 정상조 | ◦ 서울대 법과대학 학장 |
| | 전문가 | 백강진 | ◦ 서울고등법원 판사 |
| | 발명계 | 김흥기 | ◦ 지식센터 대표 |
| | 변호사 | 권영모 | ◦ 법무법인광장 IP팀 파트너 |
| | 변리사 | 김성기 | ◦ 리인터넷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|
| | 산업 | 황철주 | ◦ 벤처기업협회 회장 |
| 정부 (3인) | 지재위 | ◦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 | ◦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|
| | 법무부 | ◦ 법무부 법무심의관 | |
| | 특허청 | ◦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| |

□ 특별전문위원회 회의 개최('12.4~10월, 총 7회)

- (목표) 지재권 분쟁해결제도의 전문성·효율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여, 합목적적이고 실현가능한 최적 대안 도출
- (범위) 현안 과제인 ①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, ②소송대리 전문성 강화의 두 가지 Agenda를 집중적으로 논의
- (원칙) 소송당사자(특히 중소기업) 등 국민의 편의 최우선, 특허분쟁의 신속한 처리 및 전문성 제고
 - 그 외, 소송경제 및 분쟁해결의 일관성 도모(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), 소송대리의 절차적 적정성과 특허·기술 전문성의 균형과 조화(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) 등의 원칙下 논의 진행

□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토론회 개최('12.5.30)

- 일시/장소 : 5.20(수) 13:30~16:40/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
- 참석 : 과기계, 산업계, 학계, 변호사계, 변리사계 등 180여명
- 주요 내용 : 주제발표 및 패널*발표, 종합토론 진행
 - * 손웅희 생산기술연구원 소장, 강희철 변협 부회장, 김정중 LG이노텍 상무, 고영희 성장 대표변리사, 박진하 건국산업 대표, 이규홍 사법연수원 교수

□ 문제점 및 대안 분석을 위한 정책연구 분석 수행('12.4~11월)

- '특허소송 관할집중 및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' 정책연구 용역(연구팀4인*)을 통해, 해외사례조사·통계조사·설문조사 등 객관적인 'Fact Finding' 및 대안 분석 진행
 - * 김재형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(책임), 정차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이후동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, 이해영 리&목 특허법인 파트너 변리사

3. 주요 논의내용 및 연장 필요성

□ 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방안

- 종래 논의되던 복수 안*을 대상으로 논의한 결과, 특허침해소송 1심은 ‘서울중앙지법’ 및 ‘대전지방법원’ 전속관할로, 2심은 ‘특허법원’ 전속관할로 하는 방안에 다수의 공감대 형성

* 검토 대안

- (1안) 1심은 2개 지방법원(서울중앙, 대전) 집중, 항소심은 특허법원으로 집중
- (2안) 1·2심 특허법원 집중하되 ‘특허법원 서울분원(부)’를 신설, 1심 중복관할
- (3안) 1심은 전국지법 및 서울중앙지법 중복관할, 항소심은 현행 유지

□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

- 장기적으로는 특허변호사 제도 도입에 공감하나 단기적으로 변호사·변리사 공동대리, 진술권 제도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특위 연장 후 심도 있는 본격 검토 필요

- ▶ 개선방안에 대한 심층적 검토 및 그간 논의내용의 집대성,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기간 4개월 연장(당초 ‘12.11.6. 종료 → ‘13.3.6. 종료)

* “계속 운영이 필요한 사유 발생 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한 연장” (「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구성·운영계획(안)」, 제3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, ‘12.1.31)

4. 향후 계획

- 특별전문위원회 회의 개최(‘12.11월~2월)
 -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필요시 수시 개최
- 특별전문위원회 2012년 운영결과 본위원회 보고(‘12.12월 초)
- 특별전문위원회 최종 운영결과 본위원회 보고(‘13.3월 초)